

# 축산법에 의한 허가·면허 등의 취소·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안 공고

농수산부 훈령 제623호

축산법에 의한 허가·면허 등의 취소·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6. 2. 28

농수산부장관

축산법에 의한 허가·면허 등의 취소·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 1 조 (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 및 축산업의 등록·허가·취소, 법 제14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취소·업무정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등록취소·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증거에 의한 행정처분) 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 조사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조 (행정처분 기준) ① 종축업·축산업·부화업 및 수정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에 의하고,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별표 1 및 별표 2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각각 당해 위반사항이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기간중에 동표에서 정한 같은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위반행위자가 2이상의 위반행정을 한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나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조 (행정처분의 감경) 처분청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종축업·축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조정) 처분청은 종축업·축산업 또는 부화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45일의 범위안에서 이미 사유하고 있던 가축의 매각등 처분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당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한 행정처분은 이 훈령에 의하여 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별표 1] 종축업·축산업·부화업 및 가축인공수정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 2 조 관련)

업종별	위반사항	해당 법령조항	위반회수별 처분 기준		
			1회	2회	3회
종축업	1. 법 제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 명령을 영 제 7조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 사육부과금의 부과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14조 제 6항	등록취소		
축산업	1. 법 제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 명령을 영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 사육부과금의 부과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제14조 제 6항	등록또는 허가취소		
부     화     업	1.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법제14조 제 7항 제 1호	허가취소		
	2. 축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부화업 허가기준의 제 1호 제 2호 또는 제 4호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14조 제 7항 제 2호	경 고	허가취소	허가취소
	3. 규칙 별표 2 부화업 허가기준의 제 3호 각목의 1의 기준에 미달한 때 또는 동 기준 제 5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제14조 제 7항 제 2호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6월
	4. 법 제13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시설을 변경한 때	법제14조 제 7항 제 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5. 휴업 또는 영업재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허위로 신고한 때	법제14조 제 7항 제 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6. 법 제13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14조 제 7항 제 5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가 축 인 공 수 정 소	1. 규칙 별표 4의 가축인공수정소 시설기준의 각호의 1에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19조 제 1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2. 수정소를 개설한 수정사의 면허가 취소된 때	법제19조	등록취소		

[별표 2]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 3 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해당 법령조항	위반회수별 처분 기준		
			1회	2회	3회
가 축 인 공 수 정 사	1. 법 제16조 제 2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제17조 제 1호	면허취소		
	2. 법 제18조 제 1항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정소를 개설한 때 또는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 인공수정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	법제17조 제 2호	업무정지 3월	면허취소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액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때	법제17조 제 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제17조 제 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